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 화 중**

<차례> _____

- | | |
|---------------------|----------------------------|
| I. 머리말 | IV.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보험계약법 적용 문제 |
| II. P2P 보험의 개념과 유형 | V. 맺음말 |
| III. P2P 보험의 보험성 여부 | |
-

주제어 : P2P 보험, 인슈어테크, 핀테크, 보험계약법, 보험성, 대수의 법칙, 상호보험, 상법 제664조, 보험의 본질, 위험단체, 위험전가

<국문초록> 인슈어테크의 발전과 함께 해외에서 P2P 보험이 확산하고 있다. P2P 보험이란 소비자 스스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되,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는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P2P 보험의 유형에는 보험중개업자 모델, 보험회사 모델, 플랫폼제공자 모델이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위험단체 내부적으로 위험을 전면적으로 분담하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을 중심으로 보험원리 측면의 개념요소 구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개념에 관한 기능적 접근방식에 의하면 실질적인 위험의 전가·분산이 있다면 보험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엄격한 대수의 법칙 적용은 보험제도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보험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P2P 보험의 보험성을 전제로 계속 검토하면, 상호부조라는 배경, 공동체적 자치주의, 잉여금의 재분배,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상호보험과 유사하다. 따라서 동 모델의 P2P 보험은 상호보험 또는 그에 준한 계약으로서, 상법 제664조에 의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보험편이 준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P2P 보험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현상의 법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IT 기술의 극단적 발전으로 현대적 보험제도가 오히려 보험의 원시형태인 상호보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역설적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P2P 보험 유형에 따라 전통적 법리들

*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논문(김화중, “P2P 보험의 법적 성격과 규제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바탕하며, 소속된 회사의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 수석, 법학박사(Ph.D)

- 논문접수일(2021.02.08), 심사개시일(2021.02.10), 게재확정일(2021.02.25)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향후 국내 도입의 구체화와 함께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계속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모습으로 부각되는 핀테크(Fintech)는 그 동안 주로 은행 분야의 송금·대출, 거래결제 측면에서 진전되어 왔다.¹⁾ 최근 보험 분야도 다양한 IT 신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인슈어테크(Insurtech)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위험정보 집적,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개인정보 분석,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보험상담 및 언더라이팅,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보험계약 체결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인슈어테크의 진전으로 최근 해외에서 소비자가 위험단체 구성·운영에 스스로 참여하는 Peer to Peer, 즉 P2P 보험이 등장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각국에서 60여개 이상의 P2P 보험사업이 운영 중인데,²⁾ 해외 마케팅기관에 의하면 2020년 이후 매년 32.5% 성장률로 2025년에는 약 63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예측하기도 한다.³⁾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아직은 P2P 보험의 개념조차 생소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10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진검토 대상인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 10개 유형에 P2P 보험이 포함되었고⁴⁾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입원일당 관련 P2P 보험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⁵⁾ 한편, 2020년 12월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제9조

1) 일본의 경우도 핀테크는 주로 분산대장기술(DLT)에 기반한 자금결제 분야였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은행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부문의 IT기술 접목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미진했다. 井上俊剛, “Fintech 革命が保險監督, 保險業界に与える影響”, 『保險學雜誌』 640号, 日本保險學會, 2018, 3面.

2) “Top P2P Insurance. Startups”, *Tracxn Technologies*, <https://tracxn.com/d/trending-themes/Startups-in-P2P-Insurance>(2020년 9월 26일 방문).

3) “Peer to Peer Insurance Market - Forecast(2020 - 2025)”, *IndustryARC*, <https://www.industryarc.com/Report/17935/peer-to-peer-insurance-market.html>(2020년 11월 21일 방문).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2019.10.15.

5)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입원일당과 관련하여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도입을 2020년 2월 발표하였다. 현재 무개당

제2항) 도입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실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취급대상으로 하는데,⁶⁾ 후술하는 보험회사 모델의 P2P 보험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2P(Peer to Peer)라는 용어의 시초는 문자 그대로 기업이 아닌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의미하며, IT기술을 활용한 소비자간 상호연대의 경제개념이다.⁷⁾ 사실 보험제도 자체가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相互扶助) 또는 연대(連帶)에서 출발하였다.⁸⁾ P2P 보험은 그러한 보험제도의 기원으로 회귀하여 구성원 스스로의 위험보장, 상호연대, 보험단체의 자치적 운영을 추구한다. 다만, P2P 보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인프라 및 새로운 형태의 소통 매개체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특성이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보험제도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 the law of large numbers) 적용이란 대규모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데, 이로 인해 익명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보험자 수익추구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다. 그렇다고 상호신뢰를 보유하는 소규모 위험단체만을 운영하기에는 확률적 수리원칙 적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SNS 등 IT 신기술은 그러한 신뢰를 보유하는 집단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고¹⁰⁾ 그러한 위험단체에 대한

입원보험계약은 보험손익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는데 반하여(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제1항), 해당 상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가입자에 환급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취지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9.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2020.2.20. 한편, 일본에서도 2019년 7월 소액단기보험업자인 justInCase라는 회사가 규제샌드박스 인증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압진단 일시금 지급, 저가 보험료, 보험료 후불제를 특징으로 하는 ‘더치페이 보험’이라는 신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少額短期保険業者のjustInCase, P2P保険のサンドボックス認定を取得”, PR TIMES,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10.000029861.html>(2020년 10월 17일 방문).

- 6)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로도 지칭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금융산업 혁신추진계획”, 2020. 3. 2. 한편, 개정된 보험업법 제9조 제2항은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였고, 최근에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0억원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에 고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2021. 2. 4.
- 7) 김화중, “인슈어테크와 법적 쟁점 - P2P 보험의 출현과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11권 제2호, 연세대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 2019, 5면.
- 8) 그 취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이며, 19세기 해상보험 인수가 기피되던 선박소유자들이 스스로 창립한 선주상호보험(P&I Club)이 대표적이다.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49면; 박영준, 「P&I 보험의 법적 성질」, 『보험법연구』 제7권 제1호, 보험법학회, 2013, 75-76면.
- 9) Margarida Lima Reg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The IDD Impact”,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des Assurances*, <http://www.aida.org.uk/docs/Lima-Rego-Presentation.pdf>(2020년 11월 10일 방문).

통계기법 적용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¹¹⁾

현재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P2P 보험이 주로 소액보험 성격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P2P 보험을 단순히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한 유형으로만 보기는 곤란하다. P2P 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리는 기존의 당사자구조 변화, 그리고 기술한 것처럼 보험제도의 소비자신뢰 회복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P2P 보험의 여러 유형 중 그러한 속성이 가장 잘 투영되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에 있어서는, 보험제도의 수리적 근간인 대수의 법칙 적용 여부에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성(保險性) 등 보험의 본질론과 관련한 검토도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에서 출현하고 있는 P2P 보험의 구체적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험제도의 모습에서 가장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을 중심으로 보험성(保險性)에 관한 검토를 간략히 진행한다. 보험성 여부의 검토 후, 다음 단계로 상법 보험편 적용에 관한 해석론을 정립하기로 한다.

10) 김희중, 앞의 논문, 6면. SNS의 신뢰관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연구자료도 존재한다. P Gao, H Miao, JS Baras, J Golbeck, "Star: Semiring trust inference for trust-aware social recommenders", *Proceedings of the 10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September 2016, pp. 301-308. 한편, 그러한 신뢰와 더불어, 지급보험금 액제를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제적 이익, 동료간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감시체계(peer pressure) 역시 P2P 보험에서 전통적인 보험과 비교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원인이 된다. 吉澤卓哉, "P2P保險の保險該當性", 『保險學雜誌』644号, 日本保險學會, 2019, 87面; JH Liou et al, "Design of a Social-Based Recommendation Mechanism for Peer-to-Peer Insurance",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Workshops*, pp 49-60; Russ Banham, "peer pressure", *Risk Management; New York*, Vol. 64, Iss. 2, 2017, pp. 20-22.

11) 이처럼 공유경제의 본질을 반영한 P2P 보험은 사회적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와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의 원시형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Peer-to-peer(P2P) Insuranc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http://www.naic.org/cipr_topics/topic_p2p_insurance.htm (2020년 11월 14일 방문); World Bank Group, "How technology can make insurance more inclusive", *Finance, Competitiveness&Innovation Global Practice(Fintech Note No.2)*, 2018, p. 8.

II. P2P 보험의 개념과 유형

1. P2P 보험의 정의

현대적 형태의 P2P 보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2010년 독일에서 처음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각국에 확산 중이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¹²⁾ EU 보험·연금감독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P2P 보험을 “상호 간의 이익이나 유사한 위험을 지닌 개인의 집단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에 대비하고, 클레임 실적이 좋은 경우 이익이 환급되는 위험공유 디지털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¹³⁾ 일본에서는 P2P 보험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모임인 온라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 유사구조”,¹⁴⁾ “개인들이 직접 결성한 보험조직”,¹⁵⁾ “일정한 특성이 있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단체를 결성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를 각출하는 보험”,¹⁶⁾ “개인끼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동질성을 지닌 그룹을 형성하고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¹⁷⁾ “이해관계 일치가 있는 개인들이 그룹형성 후 보험료를 모으고 일정기간 보험사고 미발생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¹⁸⁾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P2P 보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비즈니스모델의 공통적인

12) P2P 보험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 중인데, 그에 관한 명확한 경제적·법률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거론된다. 吉澤卓哉, 前掲論文, 79면; 井上俊剛, 前掲論文, 4면; EIOPA, “Report on best practice on licensing requirements, peer to 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 2019, p. 25.

13) Ibid. “*risk sharing digital network where a group of individuals with mutual interests or similar risk profiles pool their “premiums” together to insure against a risk/to share the risk among them, and where profits are commonly redistributed at the end of the year in case of good claims experience*”.

14) 内田眞穂, “保険事業における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発展の方向性と課題～”,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総研レポート」72号, 2018, 67면.

15) 吉田和央, “InsurTech (インシュアテック) の本質と法的諸問題についての試論 - 保険版Fintechの可能性-”, 「金融法務事情」2061号, 2017, 35면.

16) 藤原總一郎, “犬イノベーションと法々勉強會提言”(規制改革推進會議・16回投資等ワーキング・グループ資料), 2018, 18면.

17) 牛窪賢一, “インシュアテックの進展”, 「損保総研レポート」第124号, 2018, 3면.

18) 井上俊剛, 上掲論文, 4면.

속성에 기반하여 정의하면, ‘소비자끼리 스스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손실까지는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되,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은 경우 소비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는 위험보장제도이다.¹⁹⁾

2. P2P 보험의 요소

(1) 보험소비자 주도의 위험단체 구성

P2P 보험이 기존 보험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위험단체 결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소비자가 대부분 또는 높은 비중의 역할을 하는 점이다. 여기서 소비자란 기본적으로 개인들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소비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위험단체를 결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판매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닌다. 둘째로, 소규모 사고위험을 보상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찾기 어렵거나 반대로 사고가능성이 너무 커서 인수를 제한당하는 경우인데,²⁰⁾ 기존 보험제도에의 접근성이 낮은 위험을 보장받으려는 경제적 수요에 기인한다.

(2)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전가 부재

전통적인 보험의 전형적 모습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轉嫁)하고 보험회사는 그 위험을 인수(引受)하는 것이다. 그러나 P2P 보험의 기본속성은 가입자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에 전가하지 않는 점이다. P2P 보험은 보험회사가 아예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위험단체 내부의 보험료 기금범위를 넘는 초과위험만 재보험 형태로 인수한다. 따라서 위험전가나 인수는 가입자로 구성된 위험단체 내부로만 수행된다.

P2P 보험 유형에 따라 위험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세부형태는 다소 다르다.

19) 김화중, 앞의 논문, 5면.

20) 국내에서 최근 이슈가 된 배달이륜차나 전동킥보드 등이 그 예인데, 기존 상해보험의 보장 여지도 있지만 고지·통지의무 관련 분쟁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고지·통지 대상에 대한 보험회사 설명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병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집, 한국재산법학회, 2019, 224-225면.

즉, 보험회사 모델과 보험중개업자 모델은, ‘보험회사에게의 출재(出財)를 제외한 범위까지는’ 내부적인 보험료기금 한도에서 위험을 보장한다.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외부로의 위험전가가 전혀 없고 보험료기금 범위에서만 위험을 보장한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입자단체 내부로 국한된 위험의 분산(分散)은 P2P 보험의 종류를 떠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3) 위험단체 운영의 자치성

P2P 보험은 위험보장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자발적 동인(動因)에 의해 보험 상품이 생성되므로, 구체적 상품내용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소비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반영된다.²¹⁾ 특히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담보생성,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투표절차를 거치는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P2P 보험의 이상적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소규모 가입자단체와 IT 기술을 적용한 직관적인 의사반영 프로세스의 결합을 통한 자치(自治)구조는 P2P 보험의 본질적 개념요소로 볼 수 있다.

(4) 보험 만기시 보험료 환급

P2P 보험의 유형을 막론하고,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보험료 잔액은 보험만기가 되면 소비자에게 환급되거나 다음 보험기간의 보험료로 재활용되며, 가입자가 특정하여 지정하는 공익단체로 기부되기도 한다. 기존 보험제도에도 무사고 환급금은 존재하지만, P2P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규모에 반비례한 이윤수취가 없고 따라서 전액 또는 상당한 비율의 보험료가 환급되는 점이 차이가 있다.²²⁾

21) P2P 보험은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인수나 보상처리에 관한 비용을 줄이고, 개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신속한 의사소통과 확실한 보상혜택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Jay D. Wilson Jr, *Creating strategic value through financial technology*, Wiley, 2017, p. 123.

22) 전통적인 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사업자의 이윤추구는 보험자와 소비자간 이해관계 대립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There’s An Inherent Conflict Of Interest At The Heart Of The Insurance Business Model”, *CBINSIGHT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insurance-business-model-tech-challenges>(2020년 10월 3일 방문); Morgan O’Rourke, “My friend, my insurer”, *Risk Management*, Vol. 64, Issue 2, Risk Management Society Publishing, Inc., 2017.

물론 P2P 보험 중 보험회사 모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사업비에 충당되기도 하고, 보험중개업자 모델도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료기금을 초과하는 손실 대응을 위한 재보험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플랫폼제공자 모델도 일정액은 플랫폼 운영수수료에 소요된다. 그러나 상기 모델 모두 사업운영자는 사전에 정해진 운영비만을 수취할 수 있고, 보험금 미지급에 상응한 이익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가입자의 의사에 의한 보험료 환급은 P2P 보험의 개념요소로 볼 수 있고, 기존에 보험회사가 취하던 이윤과 사고위험에 대한 부담을 가입자단체 즉 개인들이 스스로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P2P라는 단어의 기원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²³⁾

3. P2P 보험의 유형

P2P 보험은 (1) 보험중개업자(Intermediary) 모델, (2) 보험회사(Insurer) 모델, (3) 플랫폼제공자(Platform provider)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분류는 'peer to peer'라는 용어의 취지, 즉 위험단체 구성·운영과정에 소비자가 얼마나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도 된다. 한편, 이는 전통적인 보험의 정의나 현행법상의 보험사업 운영주체에 포함될 지에 관한 쟁점과도 관련된다. 보험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플랫폼제공자 모델과 다르게, 보험중개업자 모델이나 보험회사 모델은 종래의 B2C(business to consumer) 보험거래구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이 모델도 보험계약 체결·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주도적 역할이 더 증가하고, IT 신기술을 융합한 P2P 보험이라는 특징이 있다.²⁵⁾ 아래 P2P 보험의 구체적 사례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은 P2P 보험의 개념요소로도 볼 수 있다.

23) P2P라는 용어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금 유통에 관한 'P2P 대출'은 P2P 본래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이해된다. P2P 대출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라는 상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거래실태상으로도 기존 금융권의 대출상품보다 상당한 고금리가 적용된다. '소비자 상호연대'라는 P2P의 기원적 의미에 부합하는 용어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4) EIOPA op. cit., p. 26. 같은 기준의 구분방법이지만 표현을 달리 하여 ① 브로커형(Broker), ② 캐리어형(Carrier), ③ 상호구제제도형(相互救濟制度) 또는 기술서비스제공자(Technical service provider) 모델로 분류하기도 한다. 吉澤卓哉, 前掲論文, 80-89面.

25) Margarida Lima Regol·Joana Campos Carvalh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New Challenges Ahead or a Return to the Origins of Insurance?",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9, pp. 40-41.

(1) 보험중개업자(Intermediary) 모델

위험단체 구성 수단으로써 SNS서비스에 기반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보험중개업자는 보험료를 위험단체 자체의 보험료기금(또는 자금 pool)으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하기도 하며, 나머지는 외부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그리고 일정범위의 보험사고까지는 보험중개업자가 직접 보험금지급을 심사하여²⁶⁾ 해당 보험료기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중개업자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된다.²⁷⁾

이 모델은 두 개의 위험보장 구조가 조합되는데, 첫째, 위험단체 내부적인 위험보장에 관한 계약(mutual pool), 둘째, 외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다.²⁸⁾ 첫 번째의 내부적인 위험보장계약은 위험단체 자체 보장범위 내의 소액사고를 담보하는데, 보험회사에 의한 보장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보험은 아니다. 두 번째의 보험계약은 내부 보험료기금보다 큰 손해의 사고를 담보한다.²⁹⁾ 보험중개업자 모델은 P2P 보험의 최초유형으로 출발해서인지, 이후 사업형태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1) 독일의 Friendsurance

동 모델은 위험단체 결성과정에 Facebook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 위험단체는 15명 이내의 그룹으로 형성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해 보험료기금의 잔액이 환급되거나 다음 보험기간의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다.³⁰⁾ 위험단체 스스로 담보하는 보장한도가 전체 보험료 대비 일정비율로

26) Gian Paolo Clemente, Pierpaolo Marano, "The broker model for peer to peer insurance: an analysis of its value",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 Issues and Practice*, 2020, pp. 307-308.

27) Pierpaolo Marano, "Navigating InsurTech: The digital intermediaries of insurance products and customer protection in the EU",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Vol. 26, iss. 2, 2019, p. 304.

28) Gian Paolo Clemente, Pierpaolo Marano, op. cit., 462.

29) ibid.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의 80%는 내부적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20%는 전체 지급보험금이 80%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재보험 가입용도로 사용된다. 김규동, "P2P보험의 특징 및 활용사례", 「KiRi Report」, 442호, 보험연구원, 2018, 12면.

30) Friendsurance가 판매하는 상품은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소송비용보험 등이다. 호주에도 2016년 최초의 P2P 보험으로 Friendsurance가 설립되었는데, 자전거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캐쉬백 자전거보험(Cashback Bike Insurance)으로 설립되는데, 그룹은 10명 범위내로 구성되고 자전거 손해나 운전자의

정해져 있고, 잔여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일종의 재보험료와 자체적인 운영수수료에 충당된다.³¹⁾

2) 영국의 Guevara

Guevara는 FCA(영국 금융감독청)로부터 P2P 보험사로 허가를 득하여 보험중개업자 업무도 행한다.³²⁾ 자동차보험계약을 두 개의 담보단위로 분리한 후, 가입자 그룹(10명 이상)이 일종의 단체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총 보험료 4분의 3은 가입자그룹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보험사고가 미발생시 보험료 잔액을 그대로 다음 보험기간으로 이연한다. 따라서 이듬해의 갱신보험료는 원래 보험료해당액의 4분의 1로 낮아진다. 한편,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소속된 그룹의 보험료기금 잔액을 상시 확인가능하고,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불량가입자를 익명 투표시스템을 통해 그룹에서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³³⁾

3) 프랑스의 InsPeer

2015년 시작된 Inspeer는 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며 이륜차 및 주택보험도 취급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InsPeer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반면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수수료로 수취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위험을 공유할 동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보험금 청구비율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지표도 개발하였다.³⁴⁾

상해를 보상한다. 온라인상 2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분 내에 쉽게 가입가능하며, 보험금 미지급시 보험료의 최대 40%를 반환해준다. 독일의 경우 2017년 P2P 보험과 방카슈랑스와의 결합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 방카슈랑스' 개시도 발표되었다. 즉,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온라인포털에 보험플랫폼을 통합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온라인 은행포털에서 P2P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18년 Deutch Bank의 P2P 보험 제휴가 진행되었고, 2020년 독일은행 온라인사용자의 5%가 보험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한다. 牛窪賢一, 前掲論文, 10-11面.

31) OECD,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he insurance sector", 2017, p. 18; 吉澤卓哉, 前掲論文, 83-84面.

32) *ibid.*, p. 18. Guevara는 2017년 12월 사업중단 후 다시 재개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당시 실패이유로는 자동차보험 고객은 P2P 보험처럼 새로운 유형보다는 안정적 보험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보험사고 조사절차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었던 점이 제시된다. Brendan McGurk, *Data Profiling and Insurance Law*, Hart Publishing, 2019, p. 31.

33) *ibid.*;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諸外國の保險業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やモバイル端末の活用状況について", 2015, 122-123面.

4) 리히텐슈타인의 VouchForMe³⁵⁾

VouchForMe는 기존 보험가입자가 새로운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이 낮은 점을 보증하는 형태이다. 새로운 가입자의 무사고 경력을 기존 가입자가 보증하면, 신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는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기존 가입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고 제재금도 따로 지급해야 한다.³⁶⁾ 이 모델의 착안점은 자신의 행동이 지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을 안다면 보험사고 발생이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가 자제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³⁷⁾

(2) 보험회사(Insurer) 모델³⁸⁾

뉴욕에 기반을 둔 Lemonade는 직접 보험업 허가를 얻어 P2P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전통적인 보험제도의 구조는 유지하되 A.I 적용 등 인슈어테크를 구현하여, P2P 보험의 혁신적 사업모델로 자주 예시된다. 또한 행동경제학 원리나 챗봇(ChatBot) 등 신기술을 대폭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³⁹⁾

Lemonade의 큰 특징은 보험을 필요악이 아닌 사회적 선(善)으로 귀결시키는

34)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의 위험지표가 '3년'이라면, 매 3년에 한 번씩 청구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吉澤卓哉, 前掲論文, 80面; OECD, op. cit., p 17; "insPeer - France's first P2P Insurance Service", *The digital insurer*, <https://www.the-digital-insurer.com/dia/inspeer-1st-peer-to-peer-to-peer-insurance-service-in-france>(2020년 12월 12일 방문).

35) 2015년 Insurepal이라는 업체로 시작되었는데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다. VouchForMe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을 활용하는데, 이는 후술하는 플랫폼제공자 모델과 유사하다.

36) 吉澤卓哉, 前掲論文, 80面.

37) VouchForMe 웹사이트(<https://vouchforme.co/>) 참고.

38) 소셜·디지털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유사한 위험보장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자 풀(Pool)을 형성하고, 이를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을 'P2P 네트워크로 정의하기도 한다. 유주선,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신채널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20면. 만일 보험자 주도하 시장에서 이러한 판매채널이 형성된다면 보험회사 모델의 P2P 보험의 범주가 될 것이다.

39) 보험료는 신용기록, 기존 보험금청구이력, 연령, 부동산 정보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악천후에 대한 주택 민감성이나 위험저감장치도 고려된다. 또한 화재·도난경보와 같은 방재 요소 및 이에 따른 할인도 적용된다. 보험상담을 위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90초내 가입, 3분내 보험금지급 등 신속성을 추구한다. 채팅봇이나 PC카메라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절차를 구축했고, 자동화에 중점을 둔 백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보험회사에 비해 90% 이상의 사업비 삭감을 목표로 한다. OECD, op. cit., p 18.

대의명분과 이익분배 방법이다.⁴⁰⁾ 일반적으로 보험사업 이익은 보험회사에 귀속되고 P2P 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데, Lemonade는 미리 가입자가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할 때 빈곤퇴치 등 Lemonade가 지향하는 사회적 과제를 기준으로 자선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자선단체를 지정한 가입자는 동료(Peer)로서 동일그룹에 속한다. 보험은 ‘사회적 선(善)’이라는 지향점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P2P 보험을 출현시킨 것이다. 보험회사는 전통적 보험제도와 달리 지급보험금을 억제하여 이익을 늘릴 유인요소가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익이 제한되므로 보험가입자의 맹목적 불신이 발생할 여지도 감소한다.⁴¹⁾

위험 담보구조는 두 개로 구성되며, 첫째, 기부처 단위의 가입자그룹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부분, 둘째, 보험회사인 Lemonade가 인수하는 부분이다.⁴²⁾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빈발할 수 있는 이익의 충돌, 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거부나 보험가입자의 과잉청구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플랫폼제공자(Platform provider) 모델

Teambrella와 같은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업자가 직접 가입하지 않는 P2P 보험의 유형 중 가장 진화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공유경제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업자 제거, 거래절차 등의 간소화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금융 분야의 일종인 P2P 보험은 기존 규제범위 안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40) 이러한 취지는 Lemonade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다. “Here’s our mission: transform insurance from a necessary evil into a social good. We’ve designed Lemonade to bring out the best in people, while giving society a push for the better”.

41) 牛窪賢一, 前掲論文, 18面. Lemonade社에 의하면, 올리시스가 사이렌 소리가 자신을 유혹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돛대에 스스로 손을 묶은 것처럼, Lemonade 역시 운영비, 재보험료 등을 위한 금액을 사전에 설정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나머지는 가입자 의도대로 기부되게끔 관리한다고 한다. “Enjoying a cool discussion of InsurTech carrier Lemonade, not too sweet, not too sour”, *Daily Fintech*, <https://dailyfintech.com/2019/05/16/enjoying-a-cool-discussion-of-insurtech-carrier-lemonade-not-too-sweet-not-too-sour>(2020년 10월 10일 방문).

42) “Peer-to-peer insurance. Presented at the Insurance and Technology Event organized by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in New Orleans, Louisiana”,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http://www.naic.org/documents/cipr_events_spring_2016_p2p.pdf?51(2020년 12월 4일 방문). 기부금은 해당 비영리단체 선택자 그룹의 보험료 총액 40%가 한도이며, 잔여 60%는 Lemonade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출세보험료에 1/3씩 각각 충당된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공유경제’의 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는 곤란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출현과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명분이 결합하여, 자치적 운영구조를 지닌 동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내용이나 운영규칙(또는 약관), 인수심사, 보험금지급 등에 있어서 가입자들의 투표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⁴³⁾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권 대리행사(proxy voting)와 그에 대응한 보수지급도 허용된다. 대리투표는 위험단체 외부의 자에게 의뢰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직업적 대리투표자(pro voter)도 출현할 수 있다.⁴⁴⁾

한편,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대표적 형태인 Teambrella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위험보장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자치모델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분산형 네트워크이며, 분산이라는 특성으로 고도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지닌다. 블록체인 적용으로 이처럼 위험보장제도로서의 혁신성과 신뢰성을 함께 갖추게 된다.⁴⁵⁾

이 모델은 블록체인 가상화폐체계인 이더리움(ethereum)에 기반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지급, 보험금수령 등의 용도로 본인의 가상통화지갑(wallet)을 사용하고, 가입시 보험료 납입에 갈음하여 소정액의 가상화폐(ether)를 지갑에 보유한다. 보험사고 발생 후 가입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분담액이 해당 가상화폐지갑에서 보험금청구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따라서 가입자 전원이 무사고라면, 플랫폼 운영수수료 외에는 개인들이 부담할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43) 이러한 점에서 ‘Self-Governing’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Introducing the Third Wave of Peer-to-Peer Insurance”, *The digital insurer*, <https://www.the-digital-insurer.com/blog/insurtech-teambrella-and-the-third-wave-of-peer-to-peer-insurance>(2020년 10월 21일 방문). 이외에도 보험중개업자 모델의 경우 일정범위를 넘는 손실은 외부 보험회사가 부담하여 ‘일부손실 공유모델’이라고 칭하는데 반하여,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경우 위험단체 자체적으로 전체손실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전체손실 공유 모델’로 칭하기도 한다. 박소정·박지윤,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권호 17-11, 60면.

44) 吉澤卓哉, 前掲論文, 86面.

45) Ruo-Ting Sun et al, *Transformation of the Transaction Cost and the Agency Cost in an Organiz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Blockchain—A Case Study of Peer-to-Peer Insurance*(Frontiers in Blockchain, 2020), p. 8. 또한 블록체인을 보험계약이력, 수사기관 보고서, 재물소유권 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보험사기탐지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은 산재(散在)된 개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가입자집단 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도 될 수 있다. Swiss Re, “Mutual insurance in the 21st century: back to the future?”, *Sigma*, No 4/2016, p.38.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16-04.html> (2020년 10월 17일 방문).

Ⅲ. P2P 보험의 보험성 여부

1. 의의

우리 상법 보험편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며, 보험인수와 보험계약체결은 기본적 상행위이다.⁴⁶⁾ 새로운 위험보장제도로서의 P2P 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험법제에 어떻게 포섭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P2P 보험은 유형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위험단체 구성과정에서 소비자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전통적 보험제도에 비추어 보험회사에의 위험전가는 축소된다. P2P 보험의 종류에 따라 위험단체 외부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전가 배제가 전면적인지 또는 부분적인지 차이가 있는데, P2P 보험의 보험성(保險性) 검토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부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보험중개업자 모델과 보험회사 모델은 여전히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당사자 구조이고 각각의 역할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존 상법상 법리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부의 보험회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위험단체 내부적으로만 위험을 분담하는 가장 진보된 형태인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동 모델은 소규모 위험단체를 기반으로 하므로 대수의 법칙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도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 모델이나 보험중개업자 모델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을 중심으로 P2P 보험에 포함된 특성들이 기존의 보험원리적 측면의 보험성의 및 개념요소에 부합되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⁴⁷⁾

46) 김화중, 앞의 논문, 17면.

47) P2P 보험이 최초 등장한 유럽에서도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보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2017년 4월에 개최된 EU 보험·연금감독국 인슈어테크 회의(InsurTech Roundtable)에서는 P2P 보험의 법적 성격이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서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보험 사업형태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제시되었고, 그 이후 2019년 P2P 보험 관련 규제보고서("Report on best practice on licencing requirements, peer to 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가 작성되었다.

2. 전통적인 보험의 정의와 P2P 보험

보험원리적 측면의 보험성은 경제학적 개념의 보험성으로도 취급되는데, 이는 실정법상의 보험개념과 불가분이다.⁴⁸⁾ 경제적 측면의 보험 정의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으나,⁴⁹⁾ 통상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나 대수의 법칙에 기초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 또는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⁵⁰⁾ 또는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률의 금액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된다.⁵¹⁾

위와 같은 정의에 포함된 보험의 공통적인 개념요소로서 「① 위험, ② 다수의 경제주체, ③ 공동기금(共同基金)」과 수리적 기초로서 「④ 대수의 법칙, ⑤ 수치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⁵²⁾ 또한 좀더 광범위하게 「① 보험사고, ② 보험료·보험급여, ③ 보험의 기술」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한다.⁵³⁾ 이와 같은 분류들에 포함된 개념요소를 다시 열거하면, 「① 위험의 동질성이 있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위험단체, ② 보험료, ③ 보험금 ④ 대수의 법칙, ⑤ 보험사고」가 된다.⁵⁴⁾

보험의 전통적 개념요소를 바탕으로 P2P 보험의 보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첫째, 위험전기는 보험료와 결부하여 보험의 개념요소가 되는데,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위험전기의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있지 않으므로 보험성을 갖추고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 P2P 보험은 소규모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제도의 개념요소로서의 수리적(數理的) 원칙인 대수의 법칙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48) 김성태,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보험학회지』 제37집, 1991, 한국보험학회, 122-123면.

49) 보험을 정의하기 위한 많은 시도는 있었으나, 보험계약의 필수요소에 관하여 절대적 공감대를 얻는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Margarida Lima Rego·Joana Campos Carvalho, op. cit., p. 41.

50) 김성태, 앞의 책, 17면;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22면; 장덕조, 『보험법』 제5판, 법문사, 2020, 4면.

5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 565 판결.

52) 김성태, 위의 책, 18-20면.

53)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5-12면.

54) 장덕조, 위의 책, 5-6면.

대수의 법칙의 엄격성 여부, 그리고 실제로 P2P 보험에 그러한 수리적 기반이 전혀 없는지를 살펴본다.

3.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보험성 판단

(1) 보험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전가 여부

위험단체는 동질위험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대수의 법칙 같은 통계적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로써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 대한 재산적 급여라는 목적성을 지닌 것이다.⁵⁵⁾ P2P 보험은 단체 구성원들이 위험보장의 목적으로 단체구성 및 위험분산을 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위험단체 외관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 위험단체 정의를 검토할 때 보험료 납입은 필수요소로 취급된다.⁵⁶⁾ 즉,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은 보험의 요소이며, 그 대가관계인 '위험전가' 역시 보험 개념요소의 한 부분이 된다.⁵⁷⁾ 여기서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없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에 과연 보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전가 및 보험료가 존재하는지에 검토가 필요하다.

1) 보험 개념의 기능적 접근방식

보험의 개념요소 여부에 관하여는 위험회피 방법으로서의 위험전가 등 기능⁵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검토해야 한다.⁵⁹⁾ 보험 개념요소로서의 기능은 위험전가, 위험집적, 위험분산이다.⁶⁰⁾ 위험의 집적 및 분산은 위험단체 형성과

55) 김성태, 앞의 책, 17면; 양승규, 앞의 책, 22면; 장덕조, 앞의 책, 4-5면.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江頭憲治郎 『犬商取引法文』 7版, 弘文堂, 2013, 407면.

56) Dreher M., *Die Versicherung als Rechtsprodukt. Die Privatversicherung und ihre rechtliche Gestaltung*, Mohr Siebeck, 1991, p. 37.

57) 보험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위험의 전가로 정의되기도 한다.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15면.

58) 김성태, 위의 책, 13면.

59) John Birds, Ben Lynch, Simon Milne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3th ed., Thomson Reuters, 2015, para 1-011; 安井敏晃, 前掲論文, 25면.

60) Jerry Robert H. II,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5th ed., LexisNexis, 2012, pp. 11-14; Abraham, Kenneth S., Daniel Schwarcz, *Cases and Materials,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6th ed., Foundation Press, US, 2015, pp. 3-5(吉澤卓哉, 前掲論文, 94면에서 재인용).

그 내부에서의 분담이 표리관계이므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위험분산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보험의 요건으로 ① 위험전가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대가적 지급 의무와 관련되고, ② 위험분산은 후술하는 수리원칙으로서의 대수의 법칙과 관련된다.⁶¹⁾

보험제도란 불확실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험을 인수한 자가 그 전가자에게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약정이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우연한 사고에 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위험전가’는 각각 보험의 개념요소가 되고, 양자는 상호 대가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위험전가는 위험의 이전(移轉)이라는 모습으로써 ‘위험의 인수’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보험료 지급에 상응한 반대급부이므로 ‘보험금 지급’으로 칭할 수도 있다. 만약 상호 간의 위험전가 또는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험보장 계약을 체결한다면, 보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입자가 지급하는 금전 역시 법률적 성격의 보험료로 취급할 수도 없다.

법원은 보험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사업자가 동종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미리 일정한 금액을 각출케 하여 위험에 대비한 공동비축기금을 형성한 후,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를 입은 구성원에게 그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전보케 하는 단체적 공동비축제도라고 판시하였다.⁶²⁾ 해당 판시사항을 해석하면, 보험료 납입과 기금형성, 보험금 지급이 보험의 개념요소가 되는데, 보험료 납입은 위험전가의 반대급부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위험전가는 보험의 필수요소이므로, 예를 들어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스스로 자산을 내부에서 비축하는 자가보험(自家保險)은 위험단체가 없는 단일경제주체의 사전대응일 뿐이고 위험전가도 없으므로, 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실체는 일종의 저축일 뿐이다.⁶³⁾

2)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경우

보험자에게 위험이 전가되어 가입자들의 위험이 집적되는 형태는, 역으로 보험

61) 한기정, 앞의 책, 10면.

6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63) 김성태, 앞의 책, 29면; 김은경, 앞의 책, 40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5면; 장덕조, 앞의 책, 19면; 한기정, 위의 책, 18면.

계약 전체 측면에서 보면 집단의 위험이 개별적 위험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분산으로 인하여 개별적 위험의 불안정성이 안정적인 전체위험의 작은 부분집합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분산과 위험전가는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전통적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개별계약으로 보면 위험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배후에서는 위험단체 내부적으로 위험분산이 진행되는 것이다.⁶⁴⁾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한다면, 비록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P2P 보험처럼 외부 보험회사가 따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입자로 구성된 위험단체가 형성되어 실질적으로 위험의 전가·분산기능이 수행된다면 보험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즉, 보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위험인수를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관여가 요건은 아니며,⁶⁵⁾ 특정집단 내부적으로 위험이 분산된다면 해당 구성원 모두를 위험인수자(risk taker), 즉 보험자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⁶⁶⁾ 결국 동 모델에 있어서 SNS 등을 통해 모인 위험단체 구성원들은 보험료 분담을 통해 기능적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서로 그에 대응한 위험인수자 역할을 하여, P2P 위험단체 내부적으로 위험분산이 수행되는 것이다.

한편, 위험전가의 대가로서 보험료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는바,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의 대가적 의무도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대한 금전납입'으로만 이해하면 P2P 보험의 위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부보유하는 보험료기금(money pool)은 취합된 보험료가 아니지만,⁶⁷⁾ 위험전가리는 기능적 관점에서는 이 역시 보험료가 되는 것이다.

(2) 대수의 법칙 적용 여부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고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가능한 금전적·

64) 安井敏晃, 前掲論文, 25面. 위험이전은 궁극적으로 위험분산이라는 견해는 이와 같은 맥락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岡田豊基, 「保險本質論の法的再檢討」, 『神戸學院法學』 第25卷 第1号, 1995, 160面.

65) 吉澤卓哉, 『保險の仕組み』, 千倉書房, 2006, 97-105面.

66) 吉澤卓哉, 前掲論文, 95面. 동 문헌에서는 Teambrella와 같은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은 경제적·기능적 관점의 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공제도 위험단체 외부로 위험전가는 없지만, 위험단체 내부적으로 개별 가입자간 위험전가는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 松崎 良, 「保險契約法における共済の位置付け」, 『保險學雜誌』 612号, 日本保險學會, 2011, 245面.

67) Pierpaolo Marano, op. cit., p. 306.

재정적 손실규모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데, 위험단체의 규모가 대형화될수록 사고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정확해진다. 개별적 경제주체에 대하여는 지극히 우연하고 예측 곤란한 사실도, 다수의 경제주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빈도가 거의 일정한 법칙(大數의 法則, the law of large numbers)이다.⁶⁸⁾

그런데 P2P 보험은 위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문제가 있다. 지인이나 동호회와 같은 소수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P2P 보험에 전통적인 대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여, 그 출발자체가 대수의 법칙의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대수의 법칙이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짓는 요소로서 언제나 확고불변의 원칙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기존의 논의

전통적으로 대수의 법칙은 보험경제적 또는 보험법적 측면에서 제도 운영의 대전제이고, 보험단체 구성을 위한 통계수리적 기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가입자 집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위험분산을 위한 대수의 법칙 활용을 보험의 엄격한 요소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보험자의 인수 위험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만한 규모에 이르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성(保險性)을 부인하는 것은 보험제도사적으로나 실무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동 법칙이 수지균등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하지만 보험의 필수요소로 취급하기는 곤란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⁶⁹⁾ 보험은 무형의 위험보장에 관한 계약으로서, 정확한 확률적·통계적 기법에 기반하여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적 상호보장제도는 특성때문에⁷⁰⁾ 대수의 법칙이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그 맥락을 역으로 해석하면,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하여 확률추정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불가 등 가입자의 불이익 가능성이 없다면 수리원칙으로서의 대수의 법칙을 필수요소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된다.

68) 김성태, 앞의 책, 19면; 유주선, 「보험법, 씨아이알, 2018, 4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앞의 책, 64면; 장덕조, 앞의 책, 5면;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1998, 8면; 한기정, 앞의 책, 10면.

69) 한기정, 위의 책, 12면. 해당 문헌에 의하면 과거 17-18세기에 해상보험의 형성 시대에서도 대수의 법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판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70) 김성태, 앞의 논문, 134면.

상조회 사업의 보험업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수의 법칙을 보험의 특징적 요소로 거론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다소 완화된 적용을 하더라도 보험성이 부인되는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엄격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상조회비 산출이 없었더라도, 위험단체 전체적인 수지상등원칙이나 개별가입자의 급부·반대급부 균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납부의무를 부과했다면 대수의 법칙 활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⁷¹⁾ 한편, 상조회 사업이 비영리적이거나 한정된 구성원을 보유한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업 해당성이 부인되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⁷²⁾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험단체의 규모 여하나 엄격한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을 보험 개념요소나 보험업 해당성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⁷³⁾

2) P2P 보험과 대수의 법칙

동질·유사한 위험에 대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영해온 현대의 보험자는 위험에 관한 경험을 집적이나 통계적 측면에서 고도화된 기법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개별 보험상품의 가입자규모가 크고 작은지 여부는 보험상품 개발 또는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실무적으로도 최근 보험시장을 보면, 반도체공장의 재산보험이나 위성발사보험 같은 특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험상품도 발달하고 있고, 특정 연예인의 외모손상에 관한 상해보험도 불가능하지 않다. 현대적 보험계리 기법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확률계산 등 다변화된 통계적 방법으로 각종 보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수의 법칙 적용을 전제로 일정한 물리적 규모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요구하거나 엄격한 통계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완화된 확률적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험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⁷⁴⁾

결국 P2P 보험이 기존 제도에 비하여 소규모의 위험단체를 운영하더라도, 그

7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대법원 1989.9.26. 선고 88도2111 판결.

7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73) 김성태, 앞의 책, 25면; 한기정, 앞의 책, 22-23면.

74) 이현열, “보험단체론 - 보험의 본질의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03집, 한국보험학회, 2015, 18-26면. 특히 손해보험은 보험리스크 계산과 관련하여 재화에 관한 구조공학, 배상책임의 법적 측면 평가 등은 요구되지만 보험료 계산의 통계기법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대수의 법칙을 불변의 원칙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규모 자체를 이유로 보험성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질적 위험에 바탕한 소수 가입자들이 P2P 보험단체를 규합하여 각자가 지닌 위험정도를 공유하고(또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분담한다면,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역시 완화된 수준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 경우로 보험성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P2P 보험의 경우라도 완화된 수준의 수리적 기법은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가입자 개개인의 위험계수(coefficient)를 산출하고 그 위험계수를 바탕으로 확률적 계산을 수행하기도 한다.⁷⁵⁾ P2P 보험의 보험료 산출과 관련한 통계학적 연구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⁷⁶⁾ 기존의 보험제도에 비하여 소규모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수리적 기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플랫폼제공자 모델 역시 보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국내에 도입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IV.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보험계약법 적용 문제

앞서 보험회사가 위험인수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이 위험단체 속성으로서의 위험의 전가, 완화된 대수의 법칙 적용 등 보험성 판단의 기본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험원리 측면에서 동 모델의 P2P 보험에 보험성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이 출현한 위험보장 제도로서의 P2P 보험의 법적 성격 규정에 따라, 실정법 적용의 차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75) Paperno, A., V. Kravchuk, E. Porubaev, “Teambrella: A Peer to Peer Insurance System”, 2016, <https://teambrella.com/WhitePaper.pdf>.

76) P2P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관한 통계·기술적 연구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Samal Abdikerimova, Runhuan Feng, “Peer-to-Peer Multi-Risk Insurance and Mutual Aid”,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05646(2020년 10월 4일 방문); M Denuit, “Investing in your own and peers’ risk: The simple analytics of P2P Insurance”, *UCLouvain*, 2019; M Denuit, “Size-biased transform and conditional mean risk sharing, with application to p2p insurance and tontines”, *ASTIN Bulletin: The Journal of the IAA*, Volume 49, Issue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현행 상법 보험편은 원칙적으로 영리보험에 적용되는데,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기본적으로 영리보험이 아니다. 또한 상법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명시하는 계약 '상대방'의 보험금 지급 또는 그 밖의 급여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 다만, 상법 제664조에 의하면,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은 상법 보험편이 준용되므로, P2P 보험이 그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 동 조항 적용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1. 상호보험 개요

(1) 상호보험의 개념

상호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놓인 다수의 위험주체가 상호부조정신에 기반하여 스스로 위험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으로서 운영주체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보험(私保險) 중 영리보험(營利保險)과 대별되는 비영리보험(非營利保險)으로 분류되어 논의된다.⁷⁷⁾ 한편, 회사 형태로서의 상호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회사, 잔여재산환급청구권을 지니는 회사로 제시되기도 한다.⁷⁸⁾

상호보험은 위험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단체적 대응인데, 유럽에서 기성 보험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농부, 어부, 교사 등 경제적 이해집단에서 출발하였다.⁷⁹⁾ 상호보험은 구성원끼리의 상호부조 또는 사회적 연대, 공동체적

77) 김성태, 앞의 책, 46면; 김흥기, 「상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0, 1129면;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23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앞의 책, 10-11면; 장덕조, 앞의 책, 29면; 한기정, 앞의 책, 25-28면.

78) Antti Talone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mutual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2016-4, Elsevier Ltd. pp. 60-61. 해당 문헌은 상호보험의 정의에 관한 연구자료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의들을 아래 8가지로 카테고리화하였다. a. 보험계약자 소유회사(The mutual as a company that is owned by the policyholders), b. 보험계약자의 잔여재산환급청구권(The mutual as a company where in the policyholders are residual claimants), c.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권과 잔여재산환급청구권(The mutual as a company wherein the policyholders are decision-makers and residual claimants), d.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 수익의 분배(The mutual as a participating contract) e. 상호간 위험공유(The mutual as a reciprocal risk-sharing vehicle) f. 비영리조직(The mutual a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g.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The mutual's mission as being to look after the policyholder's interests) h. 보험계약자가 집단적으로 소유하되 보험증권의 시기·종기와 운명을 함께 함(Owner rights going hand in hand with insurance policies).

79) Swiss Re, op. cit., p. 2.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16-04.html>.

자치주의 등을 이념적 배경으로 하며, 원시적 모습으로 근대초기의 조합형태가 예시되기도 한다.

(2) 상호보험의 운영형태

상호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보장제도는 상호회사나 조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⁸⁰⁾ 국내 보험업법에 의하면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상호보험만 근거조항이 있을 뿐이며(법 제4조), 동법은 그와 관련하여 상호보험회사 성립요건이나 운영·소멸 등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법 제34조 이하).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 보험업법에 근거한 상호보험회사는 운영되지 않으며, 법원 판례에서 상법 보험편 준용이 거론된 일부 공제사업에⁸¹⁾ 국한하여 상호보험 관련 논의의 의미가 있었다.⁸²⁾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하여 2000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출범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은 선박소유자들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결성한 공제조합을 의미한다.⁸³⁾ 19세기 이전 선박보험은 선체·기관 관련 위험만을 담보했기 때문에 선주(船主)는 다른 위험은 보장받지 못했고, 이에 기존 선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1855년 출범시킨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에서 기원한다.⁸⁴⁾

상호보험은 해외에서는 조합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⁸⁵⁾ 조합은 본래 특정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지역적·신분적·직업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규모의 가입자 집단을 보유한다.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상호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자 규모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반해, 조합은 소규모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⁸⁶⁾

80) 전우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법리비교”,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 영남대 법학연구소, 2005, 189면.

8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82) 김성태, 앞의 책, 49면.

83) 김성태, 위의 책, 49면.

84) 김인현, “한국과 미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 15면.

85) 전우현, 위의 논문, 189면. 원시적 조직으로서의 조합의 형식을 지닌 상호보험이 미국 등 외국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3) 상호보험에 관한 준용 조항

상호보험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원리적 측면에서 영리보험과 실질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⁸⁷⁾ 상법은 제664조에 의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 보험편을 준용한다. 상법은 보험인수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동법은 원칙적으로 영리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영리성을 나타내는 상호보험의 계약관계에 상법 보험편을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를 준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⁸⁸⁾

2. P2P 보험과 상호보험의 비교

(1) 유사성

상호부조라는 제도적 취지, 그리고 위험단체 내부적으로 가입자들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되며 보험자와 피보험자 지위가 중첩되는 점에서,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은 상호보험과 유사성을 갖는다. EU 보험·연금감독국(EIOPA) 역시 P2P 보험은 상호보험과 유사하다고 하며, P2P 보험에 대해 ‘소규모 상호보험’으로 설명하기도 한다.⁸⁹⁾ 상호보험은 그 원시적 모습으로 ① 가입자 간의 직접적인 보험단체 결성, ② 보험가입자와 보험단체 구성원의 동일성, ③ 가입자 전원(全員)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보험단체 운영, ④ 사원의 지위에서 보험가입자가 업무 집행 참여 등이 제시된다.⁹⁰⁾ 이러한 원시적 모습은 P2P 보험의 운영형태와 유사하다.

대수의 법칙 적용 여부에서 설명하였듯이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개인별 위험도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등 수리통계적 기법이 여전히 사용되며, 완화된 수준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수리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본래 의미의 공제되는 차이점이 있고, 상호보험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86) 김동훈, “상호보험에 관한 일고찰”, 「외법논집」 제3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996, 187-188면.

87) 김은경, 앞의 책, 32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앞의 책, 11면.

88) 정동운, 대표편집, 「주식 상법 보험(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318면.

89) EIOPA, op. cit., p. 25. “The differences to traditional undertakings such as mutual insurers are not always evident(some consider them as “micro-mutual insurance”)”. 재보험사 Swiss Re의 보고서에서도 각국의 P2P 보험이 여러 측면에서 소규모 상호보험과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Swiss Re, op. cit., p. 36.

90) 우성만, “상호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 下」, 법원행정처, 1991, 139면.

상호보험의 특성으로서 위험단체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의 구성원 재분배도 제시되는데,⁹¹⁾ P2P 보험은 그와 같은 이익 재분배 측면도 정확히 일치된다. 또한 상호보험의 속성으로서 공동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연대, 공동체적 자치주의, 비영리성은 P2P 보험과 다르지 않으며 유사한 제도적 취지를 갖는다. 다만, P2P 보험과 현대적 의미의 상호보험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낸다.

(2) P2P 보험과 현행법상 상호보험의 차이

현행 보험업법상의 상호보험은 단지 상호보험회사 형태로만 기능하므로, P2P 보험은 보험업법이 인정하는 상호보험의 제도형태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34조 이하의 상호보험회사의 일정한 조직형태, 자산요건 등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 P2P 보험을 그와 같은 제도적 형태로 부합시켜 구현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현대적 상호보험회사의 모습이 점점 대규모화하고 이윤이나 채산성(採算性)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⁹²⁾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단체 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상호보험 본래 기원처럼 긴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⁹³⁾ P2P 보험은 구성원 간 상호신뢰를 지니는 소규모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므로 그런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3. 상법 제664조에 따른 준용

P2P 보험 유형 중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상호보험의 제도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P2P 보험의 운영 후의 잔여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하거나, 인수심사, 계약변경, 보험금 지급여부 등 위험단체의 전반적 운영과정에 가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치(自治) 구조는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은 상호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상법 제664조에 근거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 보험편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91) 한기정, “상호보험·공제·우체국보험의 적용법규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08, 21면.

92) 전우현, 앞의 논문, 194면.

93) 박영준, 앞의 논문, 82면.

플랫폼제공자 모델이 기존 보험제도에서 적용되던 정도의 대수의 법칙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우리 보험업법이 상호보험회사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플랫폼제공자 모델을 상호보험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원은 통계적 기법 등 전통적 보험원리의 요소를 완벽히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수준 정도라면 상호보험 유사성을 인정하여 상법 제664조의 적용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상법 보험편 준용에 이론적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P2P 보험이란 소비자끼리 스스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일정규모의 손실까지는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되,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은 경우 소비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는 위험보장제도이다. 아직 국내는 본격적으로 P2P 보험이 도입되기 전이나, 인슈어테크의 발전과 함께 해외에서 보험중개업자 모델, 보험회사 모델, 플랫폼제공자 모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모습은 다르지만 각 유형에 공통된 개념요소를 추출하면, 보험소비자가 주도하는 위험단체 결성,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전가 축소 또는 부재, 위험단체의 자치적 운영, 보험 만기시 보험료 환급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위험보장제도로서의 P2P 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험법제 아래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특히 보험원리(保險原理) 측면의 보험정의 및 개념요소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위험단체 내부적으로만 위험을 분담하는 가장 진보된 형태인 플랫폼제공자 모델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보험의 개념 관련 기능적 접근방식에 의하면, 비록 플랫폼제공자 모델의 P2P 보험처럼 보험회사가 위험보장 구조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의 가입자 단체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위험의 전가 및 분산기능이 수행된다면 보험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엄격한 대수의 법칙을 보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취급하지는 않으므로, 비록 P2P 보험이 소규모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규모를 이유로 보험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보험원리 측면에서 검토할 때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보험성을 지니는데, 상호부조라는 배경, 공동체적 자치주의, 잉여금의 재분배,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상호보험과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은 상호보험 또는 그에 준한 계약으로서, 상법 제664조에 근거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보험편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2P 보험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현상, 그것도 아직은 국내에 도입되기 전인 위험보장제도의 법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현대적 보험제도가 4차 산업혁명 이후 IT 기술의 극단적 발전으로 오히려 보험의 원시적 형태인 상호보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역설적 의미는 현 시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P2P 보험의 각 유형들은 세부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존의 보험자 역할이 축소되고 보험가입자가 주도하는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전통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향후 국내 도입이 구체화되는 경우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김홍기, 「상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0.
-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유주선, 「보험법」, 씨아이알, 2018.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5판, 법문사, 2020.
- 정동운, 대표편집, 「주식 상법 보험(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1998.
-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2. 논문

- 김규동, “P2P보험의 특징 및 활용사례”, 「KiRi Report」, 442호, 보험연구원, 2018.
- 김동훈, “상호보험에 관한 일고찰”, 「외법논집」 제3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996.
- 김성태,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91.
- 김인현, “한국과 미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
- 김화중, “인슈어테크와 법적 쟁점 - P2P 보험의 출현과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11권 제2호, 연세대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 2019.

- 박소정·박지윤,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권호 17-11.
- 박영준, “P&I 보험의 법적 성질”, 『보험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 우성만, “상호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 下』, 법원행정처, 1991.
- 유주신,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신채널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이현열, “보험단체론 - 보험의 본질의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03집, 한국보험학회, 2015.
- 전우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법리비교”,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 영남대 법학연구소, 2005.
- 최병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집, 한국재산법학회, 2019.
- 한기정, “상호보험·공제·우체국보험의 적용법규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08.

3.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2019. 10. 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금융산업 혁신추진계획”, 2020. 3. 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1. 2. 4.

<해외문헌>

1. 단행본

- 江頭憲治郎, 『大商取引法』 7版, 弘文堂, 2013.
- 吉澤卓哉, 『保険の仕組み』, 千倉書房, 2006.

Abraham, Kenneth S., Daniel Schwarcz, *Cases and Materials,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6th ed., Foundation Press, US, 2015.

Birds, John, Ben Lynch, Simon Milne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3th ed., Thomson Reuters, 2015.

Dreher, Meinrad, *Die Versicherung als Rechtsprodukt. Die Privatversicherung und ihre rechtliche Gestaltung*, Mohr Siebeck, 1991.

Jerry, Robert H. II,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5th ed., LexisNexis, 2012.

McGurk, Brendan. *Data Profiling and Insurance Law*. Hart Publishing, 2019.

Wilson, Jay D. Jr, *Creating strategic value through financial technology*, Wiley, 2017.

2. 논문

藤原總一郎, “犬イノベーションと法玄勉強會提言”(規制改革推進會議・16回投資等ワーキング・グループ資料), 2018.

吉田和央, “InsurTech (インシュアテック)の本質と法的諸問題についての試論 - 保険版 Fintechの可能性-”, 『金融法務事情』2061号, 2017.

吉澤卓哉, “P2P保険の保険該当性”, 『保險學雜誌』644号, 日本保險學會, 2019.

井上俊剛, “Fintech 革命が保險監督, 保險業界に与える影響”, 『保險學雜誌』640号, 日本保險學會, 2018.

岡田豊基, 「保險本質論の法的再検討」, 『神戸學院法學』第25卷 第1号, 1995.

内田真穂, “保險事業における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發展の方向性と課題～”,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亞總研レポート』72号, 2018.

牛窪賢一, “インシュアテックの進展”, 『損保總研レポート』第124号, 2018.

松崎 良, 「保險契約法における共済の位置付け」, 『保險學雜誌』612号, 日本保險學會, 2011.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諸外國の保險業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やモバイル端末の活用状況について”, 2015.

Banham, Russ. “peer pressure”, *Risk Management; New York*, Vol. 64, Iss. 2, 2017.

- Clemente, Gian Paolo, Pierpaolo Marano. “The broker model for peer to peer insurance: an analysis of its value”,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 Issues and Practice*, 2020.
- Denuit, Michel, Investing in your own and peers’ risk: The simple analytics of P2P Insurance, UCLouvain, 2019.
- _____, “Size-biased transform and conditional mean risk sharing, with application to p2p insurance and rontines”, *ASTIN Bulletin: The Journal of the IAA*, Volume 49, Issue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Gao, P., H. Miao, JS Baras, J. Golbeck. “Star: Semiring trust inference for trust-aware social recommenders”, *Proceedings of the 10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September 2016.
- Liou, JH., Hwang TK., Wu SN., Li YM. “Design of a Social-Based Recommendation Mechanism for Peer-to-Peer Insurance”,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Workshops*, 2019.
- Marano, Pierpaolo. “Navigating InsurTech: The digital intermediaries of insurance products and customer protection in the EU”,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Vol. 26, iss. 2, 2019.
- O’Rourke, Morgan. “My friend, my insurer.” *Risk Management*, Vol. 64, Issue 2, Risk Management Society Publishing, Inc., 2017.
- Rego, Margarida Lima, Joana Campos Carvalh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New Challenges Ahead or a Return to the Origins of Insurance?”.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9.
- Sun R-T, Garimella A, Han W, Chang H-L and Shaw MJ. *Transformation of the Transaction Cost and the Agency Cost in an Organiz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Blockchain –A Case Study of Peer-to-Peer Insurance*, Frontiers in Blockchain, 2020.
- Talonon, Antti,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mutual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2016-4, Elsevier Ltd, 2016.

3. 자료

- Abdikerimova, Samal, Runhuan Feng, “Peer-to-Peer Multi-Risk Insurance and Mutual Aid”,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05646.
- “少額短期保險業者のjustInCase, P2P保險のサンドボックス認定を取得”, *PR TIMES*,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10.000029861.html>.
- EIOPA, “Report on best practice on licensing requirements, peer to 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
- “Enjoying a cool discussion of InsurTech carrier Lemonade, not too sweet, not too sour”, *Daily Fintech*, <https://dailyfintech.com/2019/05/16/enjoying-a-cool-discussion-of-insurtech-carrier-lemonade-not-too-sweet-not-too-sour>.
- “insPeer - France’s first P2P Insurance Service”, *The digital insurer*, <https://www.the-digital-insurer.com/dia/inspeer-1st-peer-to-peer-insurance-service-in-france>.
- “Introducing the Third Wave of Peer-to-Peer Insurance”, *The digital insurer*, <https://www.the-digital-insurer.com/blog/insurtech-teambrella-and-the-third-wave-of-peer-to-peer-insurance>.
- Margarida Lima Reg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The IDD Impact”,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des Assurances*, <http://www.aida.org.uk/docs/Lima-Rego-Presentation.pdf>.
- OECD,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he insurance sector”, 2017.
- Paperno, A., V. Kravchuk, E. Porubaev, “Teambrella: A Peer to Peer Insurance System”, 2016, <https://teambrella.com/WhitePaper.pdf>.
- “Peer to Peer Insurance Market - Forecast(2020 - 2025)”, *IndustryARC*, <https://www.industryarc.com/Report/17935/peer-to-peer-insurance-market.html>.
- ‘Peer-to-peer(P2P) Insuranc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http://www.naic.org/cipr_topics/topic_p2p_insurance.htm.
- “Peer-to-peer insurance. Presented at the Insurance and Technology Event organized by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in New Orleans, Louisiana”,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http://www.naic.org/documents/cipr_events_spring_2016_p2p.pdf?51.
- Swiss Re, “Mutual insurance in the 21st century: back to the future?”, *Sigma*, No 4/2016, p.38.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16-04.html>.

“There’s An Inherent Conflict Of Interest At The Heart Of The Insurance Business Model”,
CBINSIGHT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insurance-business-model-tech-challenges>.

“Top P2P Insurance. Startups”, *Tracxn Technologies*, <https://tracxn.com/d/trending-themes/Startups-in-P2P-Insurance>.

World Bank Group, “How technology can make insurance more inclusive”, *Finance, Competitiveness&Innovation Global Practice*(Fintech Note No.2),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Platform Provider P2P Insurance Model

Kim, Hwa Joong*

P2P insurance is an insurance system in which consumers(peer to peer) form an insurance group on their own and bear the risk of a certain amount of loss, but when the insurance period expires, the balance excluding insurance payments is refunded by the consumer's designation. Although it has not yet been fu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developing into various types in overseas, such as an intermediary model, an insurer model, and a platform provider model. Even though their appearances are different, if the common concept elements are extracted, the organization of risk groups led by insurance consumers, the absence of risk transfer to insurance companies, autonomy of the operation of risk groups, and insurance premiums are refunded when insurance expires.

In order to introduce P2P insurance as a new insurance system, it is problematic how it can be covered under the existing insurance la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conforms to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nd conceptual elements in terms of insurance principles. In this regard, discussions were conducted focusing on the platform provider model, which is the most advanced form of allocating risks internally to members of risk groups without any external insurers intervening.

According to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concept of insurance, even if there is no insurance company like the P2P insurance of the platform provider model, if a certain size of subscribers is gathered and the function of actual risk transfer/distribution is performed, it is considered to have the essence of insurance. In addition, since the court does not view the calculation of premiums according to the law

* Ph.D. in Law, Lead Professional,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of large numbers strictly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insurance, even if P2P insurance is based on a small risk group, the nature of insurance should not be denied because of its size.

As such, the P2P insurance of the platform provider model has the nature of insurance in terms of insurance principle, and it has a similarity to the traditional mutual insurance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of mutual aid, communal autonomy, redistribution of surplus, and non-profit. Therefore, the platform provider model of the P2P insurance is mutual insurance or a contract equivalent thereto, and according to Article 664 of the Commercial Ac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insurance section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a new economic phenomenon called P2P insurance, a new insurance system that was still before its introduction in South Korea. However, the paradoxical meaning of the modern insurance system returning to the form of mutual insurance, which is the root form of insurance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xtrem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needs to be considered at this time.

The three types of P2P insurance differ in detail, but in a large framework, the role of the existing insurer is reduced and the role of policyholders increases.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on insurance cannot be applied consistently, and a review of various legal issues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concrete introduc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P2P insurance, insurtech, fintech, insurance contract law, the law of large numbers, mutual insurance, commercial law Article 664, nature of insurance, risk group, risk transfer

